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5 ·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1. 1. 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이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으로 개정되어 2021. 4. 6.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인 이 시행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(안 제61조 및 안 별표 4)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, 그 외 이 시행령상의 해당 법률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함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을 “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제61조”를 “제90조”로 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5조”를 “법 제8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56조”를 “법 제85조”로 한다.

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“법 제55조의2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84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58조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8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9조”를 “법 제88조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법 제60조제1항”을 “법 제8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60조제3항”을 “법 제8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법 제62조”를 “법 제91조”로 한다.

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64조제1항”을 “법 제92조제1항”으로, “법 제65조”를 “법 제93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법 제55조의2”를 “법 제84조의2”로 한다.

제56조 중 “법 제64조제3항”을 “법 제9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5조”를 “법 제93조”로 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법 제66조제2항”을 “법 제9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66조제1항”을 “법 제94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67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95조제1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67조제3항”을 “법 제9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9조의2 중 “법 제67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95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59조의3 중 “법 제67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95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69조제1항”을 “법 제9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8호 중 “법 제55조의2”를 “법 제84조의2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9호 중 “법 제60조”를 “법 제89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0호 중 “법 제62조”를 “법 제91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1호 중 “법 제64조”를 “법 제92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2호 중 “법 제65조”를 “법 제93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3호 중 “법 제66조”를 “법 제9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4호 중 “법 제67조제1항”을 “법 제95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

제46호 중 “법 제71조”를 “법 제10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57조”를 “법 제86조”로, “법 제55조”를 “법 제84조”로, “법 제56조”를 “법 제85조”로 한다.

제60조제3항 중 “법 제69조제2항”을 “법 제9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“법 제64조 및 제65조”를 “법 제92조 및 제93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법 제66조”를 “법 제94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법 제67조”를 “법 제95조”로 한다.

제61조 중 “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00조 제1항	1천만원
나.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1호	500만원
다.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2호	500만원
라.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법 제80 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 기피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3호	500만원
마.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·공유재산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4호	500만원
바. 법 제82조에 따른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 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5호	500만원

사.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1호	300만원
아.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2호	300만원
자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3호	300만원
차.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4호	300만원
카. 법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5호	300만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제3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2항제5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”로 한다.

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를
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한다.

④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4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호다목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3조의5제2호자목1)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
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⑦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10제3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”로 한다.

⑧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4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
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⑨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”로 하고, 제23조제1항제3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제42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제42조”로 한다.

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한다.

⑪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11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한다.

⑫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7제2항제8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한다.

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제6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한다.

다.

⑭ 약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⑮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”로 한다.

⑯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제10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한다.

⑰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⑱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3)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한다.

①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”로 한다.

②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7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②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7제3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다목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”를 각각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”로 한다.

②⑫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2항제2호카목1)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②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7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한다.

②⑭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2항제5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”

를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”로 한다.

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”을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”으로 한다.

㉖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한다.

㉗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”를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”로 하고,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”을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”으로 한다.

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제4호 중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”를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5

·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또는 그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	<u>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<u>5·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국가 등의 시책) 정부는 「<u>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2조·제3조 및 <u>제61조</u>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, 민주·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 ·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제50조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) ① <u>법 제55 조</u> 전단에서 “부양의무자가 있 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제1조(목적) ----- 「<u>5·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-----. 제3조(국가 등의 시책) ----- 「<u>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<u>제90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제50조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) ① <u>법 제84 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우를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법 제56조 본문에서 “부양의
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”란
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50조의2(요양지원에 대한 보조)

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
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
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
다.

②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
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
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
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
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
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
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51조(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)

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
「한국철도공사법」 제2조에
따른 한국철도공사(이하 “한국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85조 -----

-----.

제50조의2(요양지원에 대한 보조)

① 법 제84조의2제1항-----

-----.

② 법 제84조의2제1항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)

① 법 제87조제1항-----

철도공사”라 한다)와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“도시철도공사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. 다만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52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.

1. ~ 3. (생략)

-----.

② 법 제87조제1항-----

-----.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① 법 제88조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략)

제53조(주택의 우선 공급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주택법」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·공급하는 사업주체(이하 이 조에서 “주택공급자”라 한다)가 건설·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주택우선공급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「주택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, 생활수준, 희생·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제54조(시설물의 설치 등) ① 법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주택의 우선 공급) ① ----

법 제89조제1항 -----

 -----.

② -----

 ----- 법 제89조제3항 -----

 -----.

제54조(시설물의 설치 등) ① 법

제6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·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(이하 이 조에서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은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, 기념공원, 전시관, 그 밖의 기념·추모시설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55조의2(학습보조비등의 환수)

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등(이하 “학습보조비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(법 제65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)에게 학습보조비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
제91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5조의2(학습보조비등의 환수)

① ----- 법 제92조제1항-----

-----.
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법 제55조의2</u> 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	8. <u>법 제84조의2</u> ----- -----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6조(결손처분) 국가보훈처장은 <u>법 제64조제3항</u> 에 따라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	제56조(결손처분) ----- <u>법 제92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.
제57조(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) ① <u>법 제65조</u> 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	제57조(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) ① <u>법 제93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8조(품위손상행위 등) ① <u>법 제66조제1항</u> 및 <u>제67조제1항제5호</u>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.	제58조(품위손상행위 등) ① <u>법 제94조제1항</u> 및 <u>제95조제1항제5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<u>법 제66조제2항</u>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”란 「형법」	② <u>법 제94조제2항</u> ----- -----

_____.

_____.

[illegible]

1. 법 제94조제1항-----

2. 법 제95조제1항제1호 -----

3. 법 제95조 제3항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59조의2(국가 등에서 일상적으

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)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서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”이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59조의3(자료의 제공 요청)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.

제60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(제11호, 제12호, 제14호, 제15호, 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)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하고,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,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

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) 법 제95조제1항제4호-----

-----.

제59조의3(자료의 제공 요청) ---
----- 법 제95조의2제1항-----

-----.

제60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
----- 법 제97조제1항-----

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.

1. ~ 37. (생략)

38. 법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
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
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

39. 법 제6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

40. 법 제62조에 따른 시설물의
설치·건립 등에 관한 사항

41. 법 제64조에 따른 학습보조
비 등의 환수, 국세 체납처분
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
분

42. 법 제65조 및 이 영 제57조

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·확인

43. 법 제66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

44.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,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

45. (생략)

46. 법 제7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56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.

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(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

--

43. 법 제94조-----
--

44. 법 제95조제1항-----

45. (현행과 같음)

46. 법 제100조-----

② ----- 법 제86조-----
--- 법 제84조-----
--- 법 제85조-----

---.

③ ----- 법 제97조제2항-----

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)를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.

제60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국가보훈처장(제6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
5. 법 제66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
6. 법 제67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
7. (생략)
- ② (생략)

-----.

제60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92조 및 제93조-----

5. 법 제94조-----

6. 법 제95조-----

--
7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6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</u> <u>71조제1항 및 제2항</u> 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 다.	제6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</u> <u>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</u> <u>규정</u> ----- --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2 - 5493